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1.10 Vol. 26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16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9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 4)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노동위원회

22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24 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27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29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4 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3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43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4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4)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49 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51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3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5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0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2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1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69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71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75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78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환경노동위원회 특집

1. 구성
2. 관련법령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16 | 현원 16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6 | 비교섭단체 2



위원장
박 대 출

선 거 구 경남 진주시갑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호영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20대, 21대)



위원
노웅래
서울 마포구갑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위원
박범계
대전 서구을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재선(20대, 21대)



위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초선(21대)



위원
이수진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재선(20대, 21대)



위원
장철민
대전 동구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경북 상주·문경시
재선(20대, 21대)



위원
권영세
서울 용산구
4선(16대, 17대, 18대, 21대)



위원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재선(20대, 21대)



위원
김웅
서울 송파구갑
초선(21대)



위원
박대수
비례대표
초선(21대)

정의당



위원
강은미
비례대표
초선(21대)

무소속



위원
윤미향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정부기관	환경부
	노용노동부
	기상청
환경부 소속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홍수통제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기후센터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소관법률
환경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국립공원공단법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 대기환경보전법
	1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5. 먹는물관리법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 물관리기본법
	1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물환경보전법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2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석면안전관리법
	26. 석면피해구제법
	27. 소음·진동관리법
	2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9. 수도법
	3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습지보전법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33. 악취방지법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3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9. 자연공원법
	40. 자연환경보전법

부문	소관법률
환경부	41. 자원순환기본법
	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4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5. 지속가능발전법
	46. 지하수법
	4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8. 토양환경보전법
	49. 폐기물관리법
	5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5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52. 하수도법
	5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4. 한국수자원공사법
	55. 한국환경공단법
	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7. 화학물질관리법
	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60. 환경교육진흥법
	6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6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63. 환경보건법
	6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65. 환경분쟁 조정법
	66. 환경영향평가법
	6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69. 환경정책기본법
	70. 하천법
기상청	1. 기상관측표준화법
	2. 기상법
	3. 기상산업진흥법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보험법
	6.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고용정책 기본법
	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0. 공인노무사법

부문	소관법률
고용노동부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3. 국가기술자격법
	14. 근로기준법
	15. 근로복지기본법
	1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 노동위원회법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26. 산업안전보건법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29. 숙련기술장려법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1. 임금채권보장법
	32. 자격기본법
	3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37. 직업안정법
	3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 최저임금법
	4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44.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4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담배 책임법안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기획재정위원회		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재외동포기본법안
국방위원회		1.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5.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2.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제입양법안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15. 장애인권리보장법안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112723호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28.	제안

제안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방법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 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1)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안 제35조의2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신설(안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15까지 삭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사.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 · 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64조의2 신설)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2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568호



강 은 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15. 제안

제안이유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31호



이 용 빈

선 거 구	광주 광산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29.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명예훼손, 사기 등의 불법 정보로는 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교묘히 피해를 주는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현혹하거나 정보유통 구조를 악용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음.

특히,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허위 리뷰 또는 별점 테러 등이 작성되어도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정책적 사유 등으로 허위리뷰에 대한 삭제 · 차단 요청에 소극적이며, 현행 방송법상 거짓 · 과장 · 기만 광고에 대해 규제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에는 정보의 실시간 휘발성을 활용해 이용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비트코인, 급등주 등 투자 관련 거짓 · 과장 · 기만 정보로 이용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일정한 관리적 조치와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의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비추어 보면, 거짓 · 기만 · 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이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에서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될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 · 과장 · 기만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토록 하며,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 신설 및 제76조).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810호



유 의 동

선 거 구	경기 평택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0.08.	제안

제안이유

반도체 · 인공지능 · 바이오 · 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미래기술과 과학 · 연구 분야 등에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중국도 반도체 · 인공지능 · 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반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내 기술 수준(2020년 기준)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의 연구 ·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이처럼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 ·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첨단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과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21조).

바.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가첨단기술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아.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자. 국가첨단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40호



이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29. 제안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 ·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 · 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6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634호



송 재 호

선 거 구	제주 제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23.	제안

제안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 뿐 아니라 도급받은 원청하청 등도 참여하도록 하여 노동자 안전 보장과 관련해 현장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고 의사결정의 참여를 통한 책임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이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건설공사가 도급 하도급 등으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비용에 소홀 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에게까지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2조).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현장의 정확한 인식 없는 판단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 등의 사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다.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 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도급계약 체결 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7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33호



이 헌 승

선 거 구	부산 부산진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09.29. 제안

제안이유

최근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민간사업자가 결탁을 하여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1호).

8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2763호



김 윤 덕

선 거 구	전북 전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19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1.10.01.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변경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시공자를 최초로 선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요건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정비사업 지연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다른 안건에 대한 총회와 동일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정비사업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13.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2.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21.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	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414호



김 병 욱

선 거 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4.1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6.22.	상정
소위원회	2021.09.28.	상정
		제안설명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9년말 기준 가입자가 약 3,800만명으로 전 국민의 약 76%가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음.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가 2019년에는 1억 532만건으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2018년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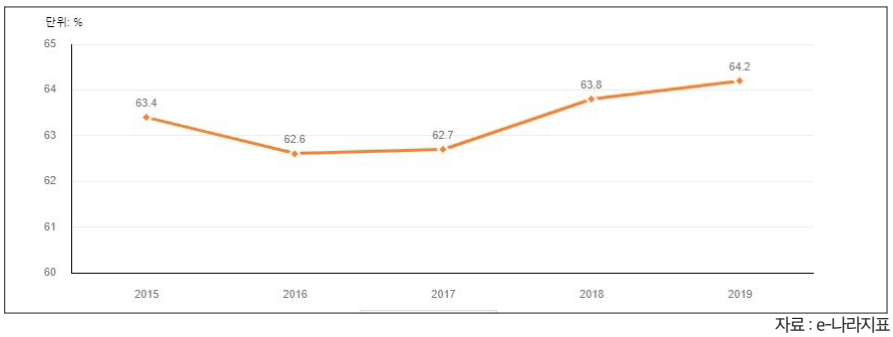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1억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또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됨.

참고자료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자료 : e-나라지표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 현황

(단위: 만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손해보험	2,720	2,737	2,794	2,812	2,871
생명보험	610	621	628	630	625
합 계	3,330	3,358	3,422	3,442	3,49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정 및 향후 대응", 202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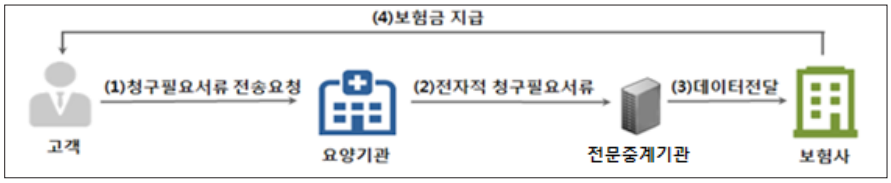
현행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조 문	주요 내용
대상자		안 제102조의6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
요청 기관		안 제102조의6①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전자적 서류 전송 비용부담		안 제102조의7③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		안 제102조의7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기관 관련	업무 위탁 기관	안 제102조의7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	안 제102조의7⑤ 및 안 제202조제3호의2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 제102조의7⑥ 및 안 제202조제3호의2	**비밀 누설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협의기구	안 제102조의7④	보험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가능

개정안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 조문

「의료법」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 지급 · 대상여부 확인 · 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 · 군 ·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

록 ·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④ · ⑤ (생 략)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① · ② (생 략)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형제 ·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 · 지급 · 대상여부 확인 · 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 · 군 ·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635호



위 성 곤

선 거 구	제주 서귀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2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8.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9.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등).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과학기술처법안
		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1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8.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40.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4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7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	7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8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4.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8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9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9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95.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6.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97.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6·25전쟁 특별법안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11.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24. 상품권법안
		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2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7.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16.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5.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
		3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40.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5개 댐 하류 · 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30.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1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830호



김 영 배

선 거 구	서울 성북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6.17.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사고로 이어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만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의무발생 및 위반 시 처벌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해체 등 건설공사 현장업무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비로 발생한 일반 시민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의무를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포함함(안 제9조제2항).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참고자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제2호)	중대시민재해(법 제2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다만,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형량 비교

구성요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형법(제26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2항)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534호



김 영 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16.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 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참고자료

현행 동의의결 절차 흐름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심의일 전까지) →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결정 → 의견수렴 절차(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 → 최종동의 의결안 상정 → 동의의결 확정

3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307호



서 일 준

선 거 구	경남 거제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0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4

정무위원회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271호



이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01.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과징금의 속성이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등 참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제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부분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함.

그러나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둔 과징금이 2조원에 달함에도 징수된 과징금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술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 납품업자 등의 구제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 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밝히는데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마저도 소송 장기화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편재로 인하여 승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그 결과 피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전받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생계 곤란에 처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대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6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피해자 지원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참고자료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금 설치 목적 (제3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 · 안정적 추진
기금의 재원 (제4조)	- 정부의 출연금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5건에 따라 집행된 과징금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변제금 -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용도(제5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 구제 사업 - 직접융자 포함 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금 지급 사업 -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 조사 · 교육 · 홍보 - 기금의 조성 ·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피해자의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관리·운용(제8조)	- 공정거래위원장이 운용 · 관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제9호)	- 피해자에 대한 지원 결정,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

5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113호



이 학 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29.	제안
상임위원회	2020.09.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1.06.23.	상정
	2021.09.28.	상정
		제안설명
		의결(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21.09.29.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안이유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만큼,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은행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형 금융회사인 은행이 일반 소비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한 거래행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은행의 주주가 은행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및 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은행의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제3항, 제39조, 제52조 및 제62조제3항).

참고자료

은행의 비업무용자산 처분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비업무용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 등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개정안의 비교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는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은행의 국내보유자산 보전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③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831호



송 석 준

선 거 구	경기 이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30.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가 2021.7.1.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렵고,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자료

근로시간 제도 개관

<기본 근로시간 규정>		<주52시간 이내>	<주52시간 초과>
법정근로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	유연근로제 (운영형태 변경) 탄력, 선택 (계산방법 변경) 재량, 사업장 밖	연장근로 예외 특별연장근로, 추가 연장근로,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 제외 업종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 특별한 사정(인가 사유) + ② 개별 근로자 동의 + ③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❶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❷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7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669호



박 주 민

선 거 구	서울 은평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6.08.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참고자료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김희곤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임종성의원안
신고의무 주체	누구든지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신고하도록 지시)
신고의무 발생 요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i)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 ii) 요구조자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 대상	119 구조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제재	X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관련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856호



이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6.17.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최근 연이어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과 재해를 관리 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물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산업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에 대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참고자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요건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 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	
사업장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 내에서,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 ·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안전 ·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첨부 1 참고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 ·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 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추천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증명사진 2장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추천권자가 후임 명예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통보 등)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자의 요청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에는 해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후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해촉된 명예감독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로 구분·운영하되, 지역별 협의회는 반드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지역특성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별 협의회 및 업종별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소구역 협의회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별로 담당구역 내에 위촉된 명예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의장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의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사업장지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 활동시간 등을 정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이 소속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의 상징물·안전장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사항, 안전보건정보지 등 각종 안전보건자료를 명예감독관에게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혜택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367호



노 웅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5.25.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자료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면 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아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 · 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 · 고농도의 석탄 · 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 · 천공

차. 불소수지 ·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 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 · 크실렌 · 스티렌 · 시클로헥산 · 노말헥산 ·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12.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0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474호



이 용 호

선 거 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1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할 뿐만 아니라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는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음.

이에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참고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개념

명칭	개념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살생물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승인(§20) * 승인기준의 주요 내용 -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 ·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제품의 취급·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확인·신고(§8·9)** *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 - 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되는 화학물질 -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용기 ·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27)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리 방법 등을 표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10)** - 제품의 명칭,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표시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29) - 제품의 명칭, 유해성 위해성 정도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10의2)** - 제품의 명칭, 주요 성분 등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35) -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 수입 금지(§11)** - 제품의 확인·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현행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구분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근거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사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대상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샴푸, 린스,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면도용 제품, 클렌징 제품, 마스크 팩, 손발 피부연화제 등 씻어 내는 제품	구중청량제, 치약제, 치아미백제
정의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소관 부처	환경부	식약처	

다른 나라의 미세플라스틱 규제 현황

구 분	미국	프랑스	대만	영국	캐나다
대상	씻어내는 화장품 (치약포함)	씻어내는 화장품 (치약포함)	개인미용용품	화장품, 개인미용용품	화장품, 개인미용용품
정의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고체 플라스틱 (크기 규정 없음)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주관 부처	식약청(FDA)	환경에너지 해양부	환경부	환경식품농촌부	환경부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미세플라스틱 정의 현황

□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에서는 대부분 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

구 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크기와 정의
국제기구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2017)	5mm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
	UN산하 해양 환경 전문가그룹(GESAMP, 2015)	1nm~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
	UNEP(2016)	직경이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입자
	ECHA(2020)	첨가제 또는 기타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고체 폴리머 함유 입자로 구성된 물질을 의미하며, 입자의 ≥1% w/w를 함유하고, 크기는 100nm ≤ x ≤ 5mm이거나, 길이 300nm ≤ x ≤ 15mm, 길이 대 직경 비율이 3을 초과하는 경우를 미세플라스틱 섬유로 구분한다. 단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자연발생 폴리머와 "생분해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에서 제외한다
국가	미국	크기가 5mm미만이고 인체 또는 그 일부를 박리 또는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고체 플라스틱 입자인 마이크로비즈
	캐나다	5mm이하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로,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명시된 독성 물질목록에 포함됨
	영국	물에 녹지 않는 5mm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인 마이크로비즈
	뉴질랜드	가장 넓은 지점에서 크기 5mm미만인 불수용성 플라스틱 입자인 마이크로비즈
	호주	물에 녹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직경 5mm미만의 작은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일반적인 직경은 100~300㎛
	한국	- 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 세정, 연마, 박리 기능으로 세탁제품 및 세정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은 5mm크기 이하의 마이크로플라스틱
	벨기에	5mm미만의 고체입자로서 물에 녹지 않고 수생환경에서 생분해되지 않는 합성 중합체로서 전체 또는 일부가 소비자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프랑스	고체 플라스틱 입자, 전체 혹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가열 공정으로 의해 얻어진 5mm미만의 미립자
	스웨덴	물에녹지 않으며 5mm보다 작은 고체 플라스틱 입자인 마이크로비즈

2.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관련 연구 동향

□ **생태계 영향**

○ **(물리적 영향)** 수생생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섭취는 종 특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섭취율 및 생체내 축적 증가하고 생존율은 낮아짐

생물	영향
해양요각류	먹이활동 둔화, 에너지 고갈, **번식량 감소 확인**
바다지렁이(UPVC)	먹이활동 저하, 장내 체류시간 증가 및 염증반응 관찰
성게 유충(PE)	**섭취후, 1시간 이내에 배설,** 유미한 생존율 **영향 없음**
해양 등각류	생물체내 축적없이 배설, 치사·성장 및 탈피 기간에 영향 않음
홍합	장 및 순환기관에 축적 관찰, 조직학적 변화와 염증반응 등 세포수준의 영향관찰
제프라피쉬(PS)	5㎛ 아가미, 간, 창자 축적, 20㎛ 아가미 창자만 관찰, 5㎛ 및 70㎛ 노출시 간염증 지질 축적 관찰

※ 대부분 높은 농도의 노출조건에서 진행되어, 실제환경중 농도를 반영한 추가 연구 필요

○ **(화학적 영향)** 미세플라스틱이 오염물질 등을 생물체 내로 전이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현재로선 부족
※ 미세플라스틱에 흡착된 물질을 장 조직으로 이동시켜 생물학적 기능 저하를 초래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물리적 영향을 매개체 영향으로 잘못 보았으며 매개체로서의 영향은 개연성이 없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음

○ **(생물농축)** 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이동은 관찰되나 농축 여부에 대한 이견 존재
※ 북극 생태계의 미세플라스틱 농축 모델링 결과, 먹이사슬 위치가 높을수록 농축이아닌 희석되는 것으로 도출 vs 상위 포식자에서 높은 생물축적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 생물농축으로 설명 가능 하는 결론

○ **(독성영향)** 주로 수생태계 개체들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독성값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아직는 자료 불충분

□ **인체 건강 영향**

○ 미세/나노플라스틱의 인체 흡수(absorption)와 관련되어 **동물실험을 통한 인체영향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황

○ 해산물 등 **섭취를 통해** 소화관에 유입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인체 위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됨
※ 입자 크기 150μm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배출이 되며 작은 입자(20μm 이하)에 한해 기관에 침투될 가능성이 보고됨

○ **호흡기**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노출가능성** 및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직업적 특성**에 의한 **미세섬유 노출** 등 건강피해 확인(네덜란드)됨

○ 미세플라스틱의 **침출성 첨가제**(주요첨가제 : BPA, 프탈레이트, POPs 등)의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부족**한 실정

1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471호



장 혜 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정의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7.1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9.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다만,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휘발유 · 경유의 과세되는 금액만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를 전부 개정하면서 과세물품을 휘발유 · 경유에서 등유 · 증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탄소세로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세수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 전체가 아닌 휘발유 · 경유(종전 과세물품)에 대한 세입의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탄소세 관련 법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2021.7.12.)

법안명<소관위>	주요내용	비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 <기재위>	· **제명을 「탄소세법」으로 변경** · 과세물품을 현행 휘발유·경유에서 중유·등유·석유가스·천연가스·유연탄·무연탄 등으로 확대 · 세율: 55,000원/tCO2eq을 대상별로 kg,ℓ로 환산- 중유 350원/ℓ, 유연탄 250원/kg 등 (2030년 기준, 2022년부터 점진적 상향) ※현행: 휘발유 475원/ℓ, 경유 340원/ℓ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환노위>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규모(교통·에너지·환경세의 25%)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 과세물품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소세 세입만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명시	(의결전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 <국토위>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개편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규모(교통·에너지·환경세의 73%)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 과세물품인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소세 세입만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명시	(의결전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제정) <환노위>	·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 · 재원은 탄소세, 배출권매각대 및 정부출연금 등 · 용도는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탄소세 환급금 지급 등 · 기금 운용·관리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탈탄소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 탈탄소위원회 위원장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의결전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 의원안)

출처: 환경부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12.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	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112679호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9.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0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09.28.	원안가결
	2021.10.08.	정부 이송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 · 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 · 가공 · 생산 · 활용되어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 · 수집 · 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 ·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 · 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10조).

바.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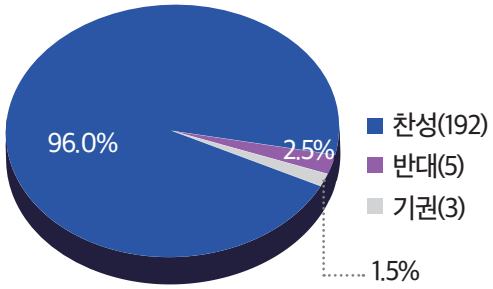
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대안반영폐기 법률안(3건)

[2106820]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2106182]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34인)
[2109463]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영의원등11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09.24 / 2021.09.28
■ **발의자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200인 / 재적 297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00인(찬성 192인, 반대 5인, 기권 3인)



찬성 (192인)

강기윤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병석 박성민 박성중 박완수 박재호 박 정 박 진 배준영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최강욱 최기상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반대 (5인)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의원



기권 (3인)

윤주경 윤한홍 이재정 의원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107707호



김 영 식

선 거 구	경북 구미시을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1.09.14.	상정
		의결(수정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1.0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본회의	2021.09.28.	수정가결
	2021.10.08.	정부이송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파응용설비가 준공된 경우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파응용설비 중 산업 · 과학 ·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설비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업 · 과학 · 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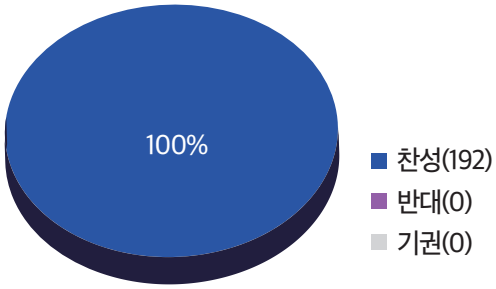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하여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동통신, 케이블TV 등의 무선국의 경우에는 전파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무선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준공신고만 하면 그 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업 · 과학 ·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만 하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제72조제2항제4호의2 · 제4호의3 등).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1.01.28 / 2021.09.28
■ **발의자 / 제안자** : 김영식의원등 14인
■ **표결 의원** : 재석 192인 / 재적 297인
■ **표결 결과** : 수정가결 192인(찬성 192인, 반대 0인, 기권 0인)



찬성 (192인)

강기윤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金炳旭 김병주 김석기 김선교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병석
박성민 박성중 박완수 박재호 박 정 박 진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석준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양경숙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상범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 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태용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최강욱 최기상 최연숙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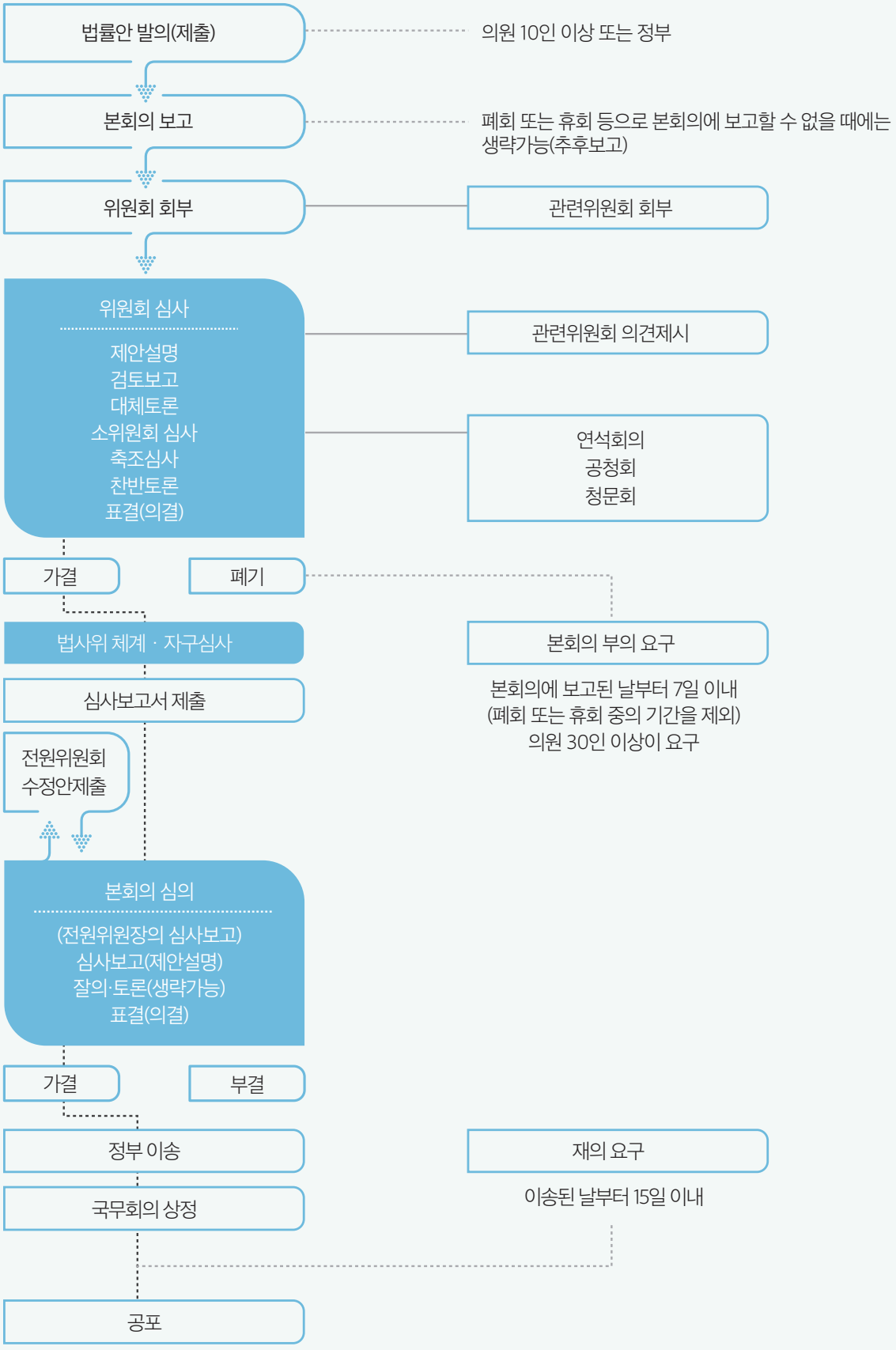
별첨 국회 일정표

10월호는 2021.09.15.부터 2021.10.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15일	16일	17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7일	28일	29일	30일	10월 1일	4일	5일	6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 391회 제6차	● 391회 제7차								● 391회 제8차	● 391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정무위원회		●								● 1법안심사 ● 2법안심사	●		●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	●					●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안심사 ● 법안심사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보건복지위원회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동훈타워 7, 8, 10-16층)
www.draju.com